

문서번호	청소행정과-104493
결재일자	2015.7.2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61호

주 무 관	자원순환팀장	청소행정과장	주민생활복지국	부 구 청 장
이수진	김동성	최성연	代유재용	07/24 정연찬
협 조	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직무대리		임인재 문정주	

2015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심의

■ 근 거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4조(기금 운용의 성과분석)

■ 심의개요

- 심의일시 : 2015. 7. 23(목) ~ 7. 24(금)
- 심의안건 : 2015. 기금운용 성과분석(2014년 회계기준)

(단위:백만원,%)

'13년도			'14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403	49	12.2	159	58	36

- 심의위원 : 동작구 「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」 운용심의위원
- 심의방법 : 서면심의

주민생활복지국
청 소 행 정 과

2015.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심의

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의 운용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·평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·건전성을 높이고자 함.

I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, 동법시행령 제8조(기금운용의 성과분석)
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기준」에 의거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

II 기금운용 개요

■ 설치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서울시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조례 제4조의3

■ 기금 조성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‘14년도 운용현황		‘14년말 조성액	‘15년 운용계획			비 고
수입	지출		수입	지출	증감	
218	58	2,289	213	1,195	△982	

III 성과분석 결과

■ 사업운영의 성과

-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 : 백만원,%)

‘13년도			‘14년도		
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	당초계획	집행실적	비율
403	49	12.2	159	58	36

※ 미집행사유

- 재활용정거장 사업보류로 집행 사유 미발생(54,686천원)
- 재활용 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사유 미발생(8,818천원)
- 세월호 관련 '동재기 나눔장터' 축소 운영(15,333천원) 등

○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- 재활용 활성화 사업 확대를 위한 물품 구매, 재활용 선별장 시설 환경 개선 및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자원 순환 촉진에 기여

■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○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비 고
- 지방자치법 제14조 -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조례	- 재활용 가능한 자원 판매 수입금 관리 - 재활용활성화	-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 사업비 - 재활용품 수집·선별에 따른 시설 유지 보수 및 장비·물품 구입	

○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

-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활용품 판매를 통해 재원 마련
-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재활용 사업비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사용을 통해 기금 설치목적 달성

■ 재원조성의 적정성

○ 기금 재원의 성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총수입			지출 (고유목적사업비)	기금총액 (통장잔액)
	소계	판매대금	이자		
1994년~ 2014년	2,999	2,412	587	710	2,289

IV

심의위원회 심의

- 심의근거 : 서울시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조례 제4조의3
- 안 건 : 2015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성과분석결과
- 일 시 : 2015. 7. 23(목) ~ 7. 24(금)
- 방 법 : 서면심의

- 붙 임 1. 2014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성과분석 보고서 1부.
 2. 심의 의결서 1부.